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동계훈련 합숙소 건립과 신공설운동장내 육상트랙 우레탄포설 공사의 완료로 체육시설관리·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체육시설에 기존 공설운동장, 체육관 이외 보조경기장, 우레탄 육상트랙, 동계훈련 합숙소를 추가하고,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시 수수료 인상, 체육시설 사용료 중 [별표1] 기본사용료에 보조경기장, 동계훈련 합숙소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정하고, 전용사용료, [별표2]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비율, [별표3] 수수료의 징수에 기존 실내체육관, 공설운동장 이외 동계훈련합숙소를 동시 적용토록 하는 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고성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체육시설 기본 사용료중 실내 체육관 조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나?
- 답 : 하계는 05:00~08:00이고, 동계는 06:00~09:00임.
- 문 : 동계훈련 합숙소 사용료가 동절기 전지훈련의 경우 평일·공휴일 모두 1일 1동기준 40,000원으로 되어있는 기준은?
- 답 : 경남 함안군, 강원도 태백시 동계훈련 합숙소 사용료를 비교검토하여 동계 전지훈련팀의 특성상 난방비, 전기요금, 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를 징수함이 타당하므로 20인(1동) 기준으로 1인 1일 2,000원으로 계산하여 40,000원으로 정함.
- 문 : 동계훈련 합숙소에 입주했거나 입주계획으로 있는 전지훈련팀은?
- 답 : 2004. 1. 14 충북 체육고등학교 1개팀이 입주하여 훈련하고 있으며, 앞으로 강릉경일여고, 포항전자여고 등 축구팀 8개팀, 경남 체고 마라톤팀 등 10개팀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문 : 동계훈련 합숙소 6개동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문제점이나 차후 사용료 인상 등 개정요인 발생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
- 답 : 금번 동계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 등 체육시설운영·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, 타 시·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완할 사항이 발생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1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